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8호-

Child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욱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7년 6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 과제

Child abuse :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현안 이슈를 살펴 그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발전방향을 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최선의 환경은 가정이다.
-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한 이후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실천이 필요하다.
- 학대사건조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 아동보호와 안전의 수준에 있어서 접근성, 충분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종합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ituation

1990년대 후반 아동학대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기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방송되었고, 이를 계기로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발생한 울주군 및 칠곡군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한 촉발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아동학대 개입에 있어서 사법체계의 변화를 가져왔고, 정부도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부는 2016년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또 다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정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된 이후 급하게 정책들을 마련하면서 제대로된 진단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마련에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현황과 현안 이슈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발전방향을 논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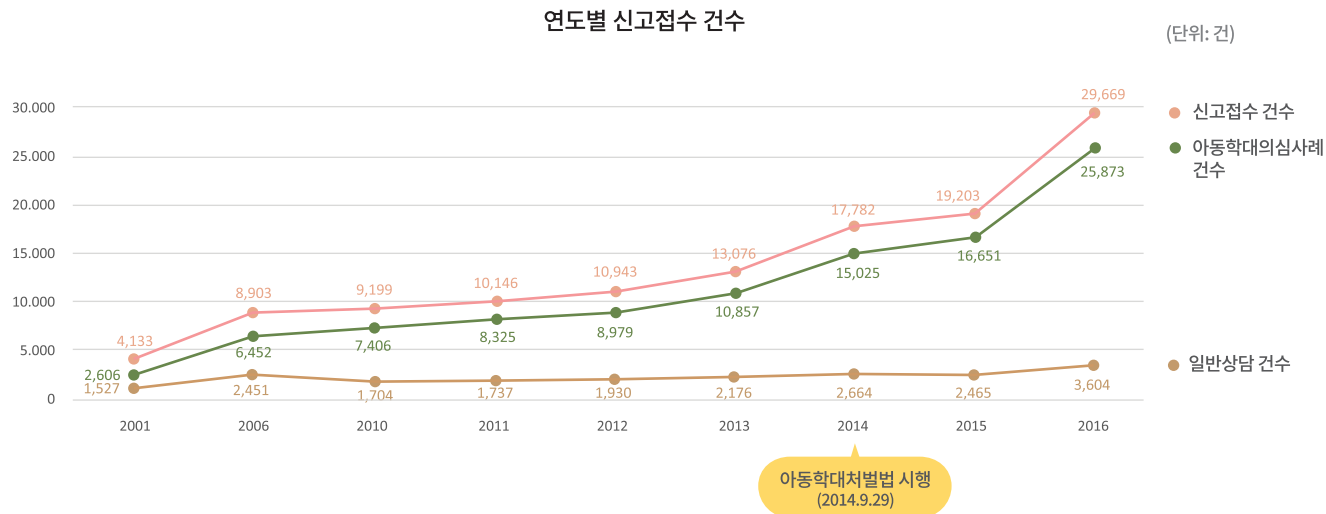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생 현황

꾸준히 증가하는 아동학대¹⁾ 신고, 그러나 여전히 낮은 발견율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아동학대 국가 통계가 생성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6년의 경우, 전체 상담신고건수 중 87.2%가 아동학대의심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아동학대 발견율로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3명으로 미국(9.1명)과 호주(7.8명) 등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편이다(관계부처 합동, 2016).

한편, 아동학대 발견율과 체감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굿네이버스의 아동권리실태조사²⁾에 따르면 한 달에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³⁾이 전체 아동 중 27.4%로 나타났으며, 이를 1,000명 단위로 환산하면 275명에 달한다. 이는 아동학대 발견율 1.3명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결과로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많음을 알려 주고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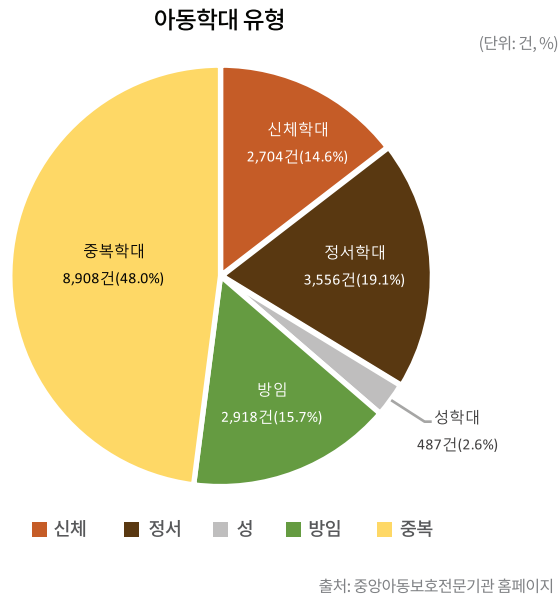
1)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총 17,83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조사하였다.

3)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에 관한 16개 학대지표 중 1가지 이상의 항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을 뜻한다.

복합적인 유형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판단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2016년 기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가 19.1%(3,556건)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방임이 15.7%(2,918건)과 신체학대 14.6%(2,704건), 성학대 2.6% (487건)의 순으로 분포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대로 인한 피해양상이 심각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 받는 아동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8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 교직원 등의 대리양육자가 11.3%로 그 뒤를 이었으며, 조부·조모 등의 친인척, 이웃·낯선 사람 등의 타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82.4%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이후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원가정보호가 7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016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결국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되고 있는 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가족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서비스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에 취약한 영아, 근절되지 않는 아동사망 사건

학대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를 살펴보면,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1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은 33.8%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은 28.5%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기인 만 0세~만 3세의 아동은 14.1%로 나타났는데, 영아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동의 신체적 취약성과 낮은 발견율로 인해 영아 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건수는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사망아동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연령을 2015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전체의 68.4%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결국 아동 출생 이후 영아를 모니터링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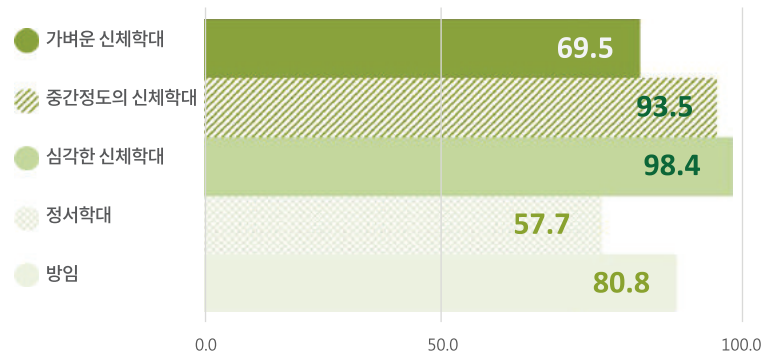
여전히 낮은 아동학대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발견율과 아동이 실제로 체감하는 아동학대 경험 정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아동학대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에서 학대유형별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으로 화상입히기’ 등의 심각한 신체학대는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꼬집거나 벨트·골프채·몽둥이 등 도구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 등의 가벼운 신체학대는 10명 중 약 3명이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는 것’,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 등의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57.7%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10명 중 약 4명 정도가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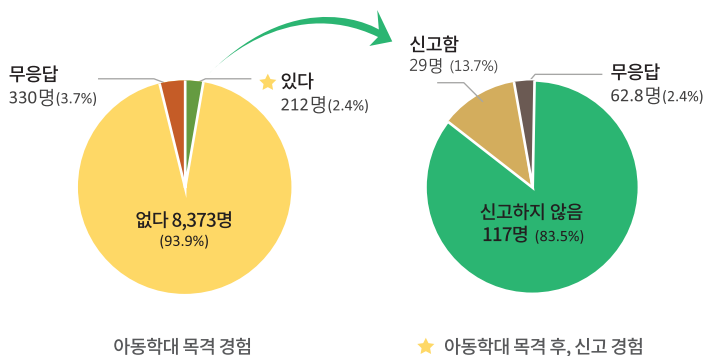
출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

아직도 갈 길이 먼 아동학대 신고 인식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는 ‘낮은 아동학대 신고 인식’을 들 수 있겠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목격한 이후 실제 신고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실제 신고를 했다는 비율은 13.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부모가 아동을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2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신고 후에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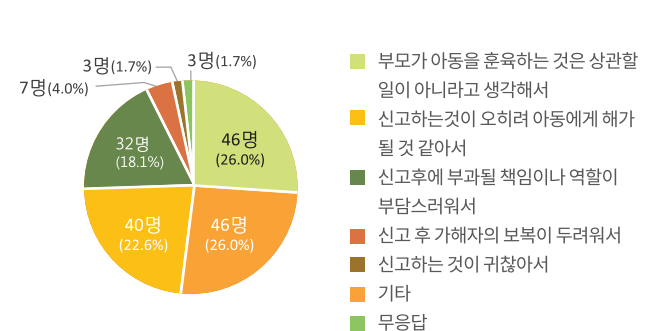
아동학대 목격 및 신고 경험

(단위: 명, %)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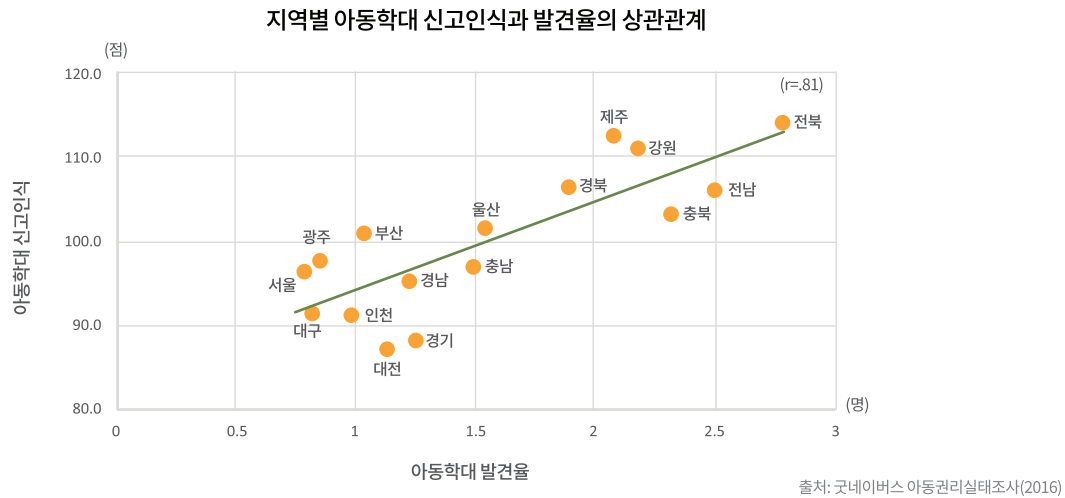
출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

아동학대 개입의 가장 첫 단계는 신고이다. 따라서 신고인식이 낮을 경우 피해아동 발견조차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실제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실태조사에서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인식⁴⁾과 아동학대 발견율⁵⁾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신고인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816$). 이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책임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실행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아동학대 신고인식: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장래에 도움을 준다는 인식’, ‘신고 이후 기관의 적절한 개입에 대한 신뢰’, ‘신고를 통한 아동학대 감소 신뢰’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100점을 평균으로 환산하여 산출

5) 아동학대 발견율: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수

6) 상관계수(r)는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인 간의 상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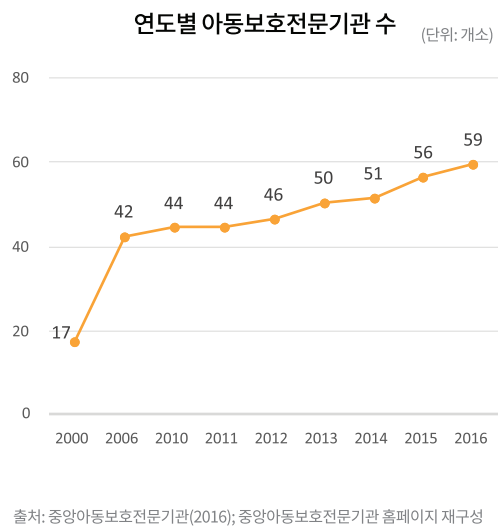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보호 지원 체계

증설이 시급한 아동보호전문기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2000년 17개소로 시작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2016년 기준 59개소로 확충되어 아동학대 업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제 45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시군구 대비 26.1%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러개의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가 2시간 이상 되는 지역도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인구 50만명에 평균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설치하고 있고(김미숙, 2014),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는 아동인구 10만명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설치를 하고 있다(이은주,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약 151만명, 아동인구 약 28만명에 1개소가 설치 8)된 지역도 있어 증설이 시급하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은 지역내 피해아동 발견과 사건대응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근본적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서로 연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양소남, 201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와 관련한 예산확보 자체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인프라가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지역에서 아동학대를 발굴하는 복지 관련 기관,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으나, 사례를 직접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 발굴과 대응에 있어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에 촘촘히 설치되어야 한다.

7) 전국 행정구역(시·군·구) 현황(2016 기준)은 226개이다(행정자치부, 2016).
8) 전국 인구(행정자치부, 2016) 및 아동 추계 인구(통계청, 2016) 대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지역별로 비교 산출

열악한 아동보호전문서비스와 전담인력의 부족

아동학대 개입은 학대를 발견함과 동시에 시작된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함은 물론 학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행위자, 그리고 가족의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동학대 사례 업무를 하고 있는 전담인력으로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봉주 외(2015)의 연구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담당 건수는 평균 54사례를 육박한다. 미국 아동복지연맹에서는 1인당 12~17사례가 적정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이은주, 2015), 이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당 기준의 3~4배가 넘는다. 아동학대신고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조사와 사례를 담당할 전담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이직율은 31.2%로 이직이 잦은 편이며, 상담원 평균 근무기간은 1.7년에 불과한 실정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는 업무 특성상 전담 인력의 역량에 따라 사례 개입의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낮은 근무 연수는 전반적인 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아동과 가족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상담원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사례관리 보다는 현장 조사와 위기 대응에 급급한 현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에 아동보호 서비스를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담인력 확충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정부예산

김수정·정익중(2016)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3,899억원(GDP 대비 0.03%)에서 최대 76조원(GDP 대비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이 비용의 최소 4.3% 수준으로 OECD 평균의 7분 1 정도의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워낙 관련 예산이 적어 비교조차 힘든 상황이다(김수정·정익중, 2016).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2013년 기준)은 GDP 대비 1.13%로, OECD 국가의 평균 2.14%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33개 회원국 중 30위로 나타났다(OECD 홈페이지). 우리나라 아동 1인에 대한 복지비용은 노인 1인에 대한 비용의 1/8 수준이며,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육을 제외하게 되면 아동복지비용은 너무나 협소하다(윤혜미, 2015).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아동권리의 극단적인 침해, 아동학대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존엄성과 신체적, 정신적 온전성을 인정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공격성, 위축, 비행 등 전반적인 내재화 또는 외현화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학교생활이나 학업성적, 범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김광혁, 2009; 안혜진, 2016). 아동학대가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 자살문제, 학업성취, 공격성, 비행, 범죄행동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축적되었다. 또한 외국의 여러 종단연구에서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에 학대받았던 청소년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비행과 폭력 범죄행동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김세원, 2014). 더욱이 아동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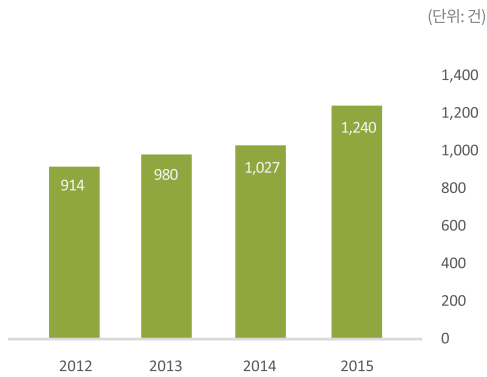
이렇게 아동의 생존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대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돌아가야 할 곳, 가정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동시에 필요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며, 아동학대로 신고 된 77.8% 이상의 아동이 원가정 보호조치 되어 아동의 가정에서 보호하게 된다. 아동이 성장하는데 최적의 환경은 가정이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가능한 회복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이은주, 2016).

그러나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를 경험하는 재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14건에서 2015년 1,24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5년 기준 10명 중 1명의 아동은 재학대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동 보호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갈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러한 특성들은 가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녀양육 기술 훈련, 부모상담, 경제적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키고 위험발견 시 바로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간 아동보호 수준의 불평등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의지에 따라 아동보호사업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을 보면, 기관당 담당 아동수가 대전은 최고 283,823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제주 58,924명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 간 약 4.8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접근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아동보호 수준의 불평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이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책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방치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하게 발표된 정책으로 아동보호를 위한 최선의 종합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발표된 정책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수반계획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 아동보호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업무로 관리하는지는 예산편성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동보호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지 못하고, 불안정한 기금예산(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책임지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 내에서 의무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가의 기본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Recommendations |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최선의 환경은 가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 다시 말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은 가정이고, 모든 아동은 가정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 안에서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박명숙, 2006). 즉, 아동을 가정에서부터 격리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혹 격리된 경우여라도 학대재발 위험이 없을 경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실천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발생한 이후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사회전반에 알리고 부모교육 등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이후에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개입과 가족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경제적 직·간접 비용이 최소 3,899억, 최대 76조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수정·정익중, 2016). 즉 학대피해는 아동 및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 개입으로 인한 보호·법집행 등과 관련한 비용, 범죄발생 또는 경제활동 손실 등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과 가정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실천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기능 뿐 아니라 심리적인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후유증에 대해 제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안전 확보와 아울러 아동이 겪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기능에 대한 사정을 기반으로 한 개입전략 모색이다. 또한 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

아동학대 현황 통계를 보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60% 이상이 ‘지속관찰’로 나타나고 있다(2016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즉 처벌에까지 이를 만큼 심각한 학대행위는 아니지만 60%가 넘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학대 발생 등을 살펴 상담 또는 교육 등을 통해 양육태도 등을 교정할 뿐 아니라 취약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학대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인력부족과 접근성 등의 문제로 대부분 개별치료, 단회적인 상담 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선의 지원과 개입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모형의 전략적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효과성이 입증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증거기반실천 모형의 파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행할 전문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배치되어야 한다.

학대사건조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비스제공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개입은 학대사건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행위자 처벌 중심의 사법적 대응과 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지원 중심의 복지적 대응의 상반된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아동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다(이봉주 외, 2015).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아동학대 개입에 있어서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행위자 처벌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그리고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서 시행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조사중심의 업무는 범죄사실 여부 확인과 보호자의 고유한 권리인 친권에 대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의 영역은 민간기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문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봉주 외, 2015).

따라서 조사중심의 업무는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실천은 전문성에 기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재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아동보호와 안전의 수준에 있어서 접근성, 충분성의 기준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동안전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아동 안전망 수준에 있어서 아동들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동일한 정도의 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를 대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있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아동학대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사건 대응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체계의 물리적인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며, 아울러 아동 및 가족 전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충분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사자 또한 현재보다 충분히 확충하여 적정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보호체계의 접근성과 충분성은 결국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별 이동거리, 아동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아동보호 안전망을 지역별 편차 없이 구축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의 종합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한해에만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36명에 달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그리고 2년만인 2016년 아동학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발표 시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후였다. 언론과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마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정책으로는 보기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조 제1항)과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에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종합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실태 확인, 아동학대 발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예방 또는 개입방안 마련, 현재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편 방안 도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방안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계획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부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가칭,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 설치된다면 아동학대예방정책의 통합적이고 유기적 시행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Case Story |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전문서비스

굿네이버스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하면서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성남에 아동학대상담센터 개소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돕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과 관련 제도 개선,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28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18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의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2015)하였고,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개선과제 중 현장의 전문성강화 전략과제를 후속 연구과제로 채택,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전문서비스’ 모형으로 개발하였다(2016).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모형이다. 통합사례관리체계의 플랫폼에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감소, 아동학대 재발 방지, 그리고 가족 기능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모델,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3가지 모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모형은 현재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범적응중이며, 서비스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원가정보호서비스

원가정보호서비스는 학대 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안전 계획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및 학대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를 위한 서비스는 물론 아동과 부모 함께 참여하는 회기를 통해 부모 자녀가 함께 새로운 소통의 방법을 훈련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가족재결합서비스

아동과 가족의 안전하고 행복한 재결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학대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가정이 안전한지, 아동과 양육자가 준비가 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포함되며 아동과 양육자가 재결합 이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프로그램, 주양육자프로그램, 아동과 가족이 함께하는 전환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양육기술 프로그램 이후 상담원이 제공한 유인물을 가정 내 액자에 비치한 아동친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보고 있어요. 액자를 볼 때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각나요. ‘아이 앞에서 부모로서 행동을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고○○ 친부(원가정보보호서비스-양육기술프로그램 참여)

“ 기존 아동학대 사례관리에서는 아동학대가 재발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모니터링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제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제공자의 중심의 서비스를 벗어나 그들이 가진 강점과 역량에 관심을 갖고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 박재민 대리(굿네이버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전문서비스’는 2016년 모형 개발 이후 현장 시범적응과 효과성 평가연구 과정을 거쳤고, 현장에 가장 최적화되고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로 2017년 전국에 공개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예방하고 사례개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 굿네이버스(2016). 아동권리실태조사.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미숙(2014).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간 연계성 고찰-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3(-), 125-135.
- 김수정·정익중(2016).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아동복지학회, 53(-), 25-50.
- 박명숙(2006). 피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한 한국적 함의. 아동학회지, 27(5), 79-93.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안혜진(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중단연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475-493.
- 양소남(2016). 공중보건모델에 근거한 호주의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3(8), 79-98.
- 윤혜미(2015). 사회투자시각에서 본 한국의 아동복지. 생활과학연구논총, 19(1), 1-16.
- 이봉주·김기현·안재진(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봉주·김세원(2014). 아동학대가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적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8(2), 163-195.
- 이봉주·민소영·김경희·안재진·이유니·유서구·정해린(2016). 굿네이버스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 모형개발 연구. 굿네이버스.
- 이은주(2015).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회, 20(1), 69-85.
- 이은주(2016).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9(-), 73-94.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이직률 및 근무년한 조사 결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자료).
- 통계청(2016). 2016년 아동추계연구.
- 행정자치부(2016).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6.12.31. 기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go.kr/new/> 2017년 5월 17일 검색.
- 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2017년 5월 17일 검색.